

IV

펀드투자는 관련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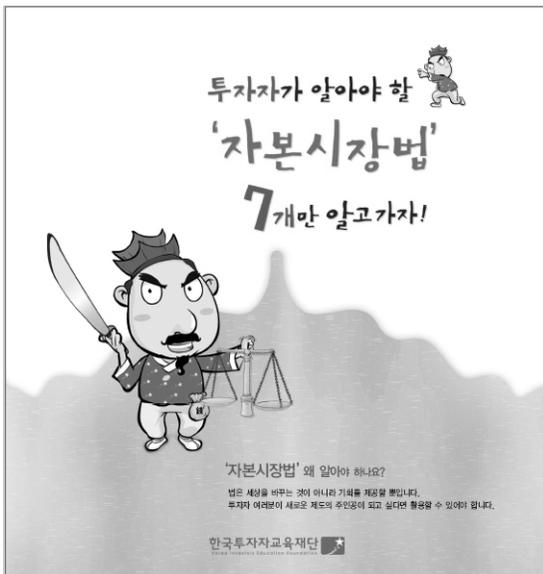
펀드투자에 필요한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펀드 투자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한국투자자교육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nvedu.or.kr>)가 제공하는 교육자료를 이용하여 펀드 투자에 대한 기초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 한국투자자교육재단은 펀드 투자자의 권익 향상과 자산운용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투자자교육 전문기관으로 펀드 재테크 자료 등 펀드 투자를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자가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자교육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의 펀드 교육자료

< 추천 교육자료 >

1 “투자자가 알아야 할 자본시장법 7개만 알고가자”



1. 나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어요.
2. 충분히 설명을 들었나요?
3. 판매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 투자자도 알아야 할 표준투자권유준칙
4. 다양한 상품을 만날 수 있어요.
5. 투자권유대행인을 아시나요?
6. 투자자문계약, 없었던 걸로 해요.
7.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알아야 해요.

② “펀드투자, 이것은 알고 합시다”



목 차

1. 꼭 기억합시다.	3
2. 펀드란 무엇인가?	4
3. 펀드는 왜 좋은가?	6
4. 펀드 기초 용어	7
5. 펀드의 종류	8
6. 펀드의 위험과 수익	10
7. 펀드투자의 3원칙	12
8. 펀드투자 비용	13
9. 적립식 펀드투자	14
10. 펀드 가입과 환매	16
11. 펀드 관련 세금	17
12. 펀드 수익률 계산	18
13. 펀드를 고르는 요령	19
14. 펀드 가입 절차	20
15. 펀드 가입 후 관리	22
16. 펀드 정보 찾기	23

③ 놀부재테크 시리즈

놀부 동영상 (총 42편)



홈 >> 교육자료 >> 놀부재테크

놀부 만화책 (기초편, 실전편)



홈 >> 교육자료 >> 펀드 FUNs

④ 펀드야 방가방가



* 청소년 동영상 총 30편

- 1. 돈 버는 건 하늘의 별 따기 (1~9편)**
기업, 투자, 저축, 대출, 주식, 채권
- 2. 세상에서 가장 좋은 펀드를 찾아서 (10~18편)**
펀드의 개념, 펀드의 종류, 수익률, 판매회사, 기준가격, 평가금액, 위험성향
- 3. 걱정하는 알쏭달쏭 펀드투자(19~25편)**
투자설명서, 펀드비용, 프리콜라, 펀드보그서, 환매수수료, 세금
- 4. 경험담(26~30편)**
적립식펀드투자, 인위스펀드, 해외펀드, 펀드알가회사, 아름다운 기부

* 지도편 동영상 총 10편

홈 >> 교육자료 >> 펀드야 방가방가^^

- 펀드 투자는 매매거래시 일회성 수수료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거래와 달리 판매 및 운용 등 단계별로 수수료, 비용과 보수 등이 부과되므로 펀드의 보수 및 수수료 등이 어떻게 산정·부과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펀드에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 등 제반비용은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펀드통계(<http://stat.fundservice.net>) Quick link 보수 및 비용비교 확인 메뉴를 통해 펀드별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펀드통계(<http://stat.fundservice.net>) Quick link의 펀드 비용계산기를 이용하면 투자자가 투자 예정펀드의 예상수익·비용을 미리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 펀드의 운용실적은 자산운용사의 운용능력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영업실적, 수탁고 등 경영정보와 펀드매니저, 펀드 수 등 자산운용사에 대한 정보를 참고해야 합니다.
 - 자산운용회사 정보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http://dis.fundservice.net>) 사이트의 회사공시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펀드매니저 및 펀드수 정보는 협회 펀드통계(<http://stat.fundservice.net>) 사이트의 Quick link상의 펀드매니저 및 펀드 수 현황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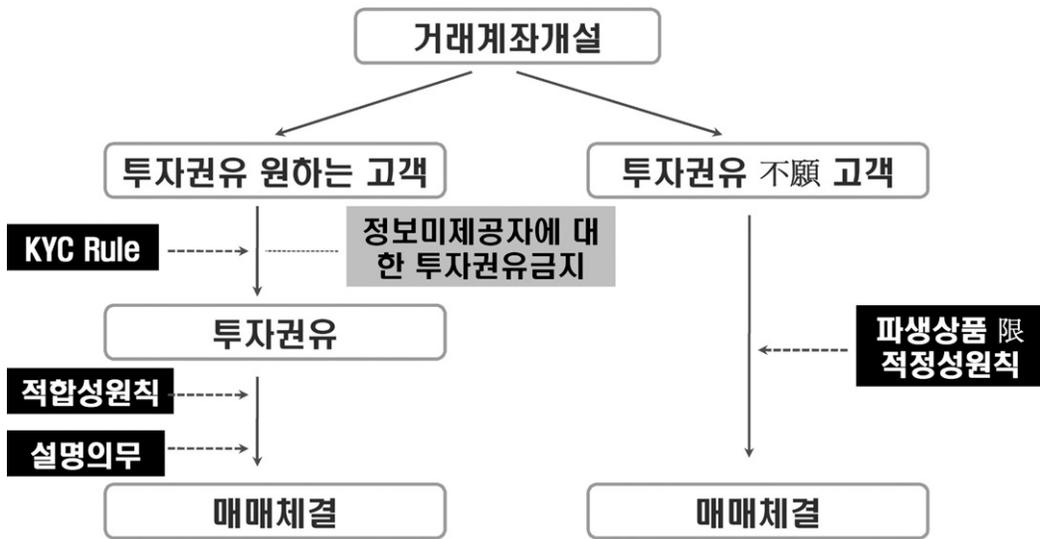
- 한편,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에 제출되는 펀드신고서를 통해 투자하고자 하는 펀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펀드신고서는 펀드 투자자에 대한 펀드 정보 공시를 확대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이 새로 도입한 제도로써 상장기업 등이 주식 등을 공모하는 경우 발행기업의 재무상황 및 발행하는 증권에 대한 제반 정보를 공시하는 것과 동일하게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자산운용사 및 펀드에 대한 제반 정보를 펀드신고서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 펀드신고서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펀드의 운용방법 등 펀드 운용에 관한 사항이 투자신탁 약관 또는 투자회사 정관에 규정되어 펀드 투자에 따른 위험요소나 투자위험등급 등 중요사항에 대한 정보 공시가 미흡했으나 펀드신고서 제도의 도입으로 펀드에 대해서도 주식 등과 동일한 수준의 정보가 공시됩니다.

펀드 발행제도 관련 주요 변경내용		
구 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자본시장법
펀드 등록 및 발행	약관보고	펀드등록(공·사모) 펀드신고서(공모)
자산운용사 등의 책임강화	설명 의무	허위기재시 손해배상 책임 및 적합성원칙, 고객알기 의무, 부당권유금지 추가

○ 펀드신고서는 상장기업 등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와 같이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 <http://dart.fss.or.kr/>)의 펀드공시 메뉴를 통해 조회·공시가 가능합니다.

2 펀드가입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투자권유 FLOW



* Know Your Customer Rule,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적정성원칙 등은 일반투자자에게만 적용

● 펀드 투자를 위해 증권회사, 은행 등 펀드를 판매하는 금융회사(이하 판매회사) 영업점을 방문하는 경우 상담직원이 적당한 자격을 갖춘 직원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투자자를 상대로 펀드에 대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는 판매회사 직원은 펀드의 종류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직원으로 제한됩니다.

○ 예를 들어 부동산펀드에 대한 투자권유는 금융투자협회가 주관하는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금융투자협회에 부동산펀드 판매인력으로 등록된 직원이어야 합니다.

○ 판매회사의 위탁을 받아 펀드 투자권유 업무를 대행하는 투자권유대행인도 판매회사 직원과 동일하게 펀드의 종류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을 거쳐 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장 금융투자상품 거래, 무엇이 궁금하세요?”를 참고

●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판매회사 직원의 투자권유를 받아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 정보확인서 작성 또는 상담 등을 통해 판매회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 판매회사에 제공하는 투자자 정보는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적합한 펀드상품을 권유하기 위한 기초자료이므로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판매회사의 투자권유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투자권유 없이 투자자의 자기결정과 책임하에 투자한다는 확인서를 작성(서명)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 투자권유를 받을 때 투자자 정보 제공 등에 대해서는 “제2장 금융투자상품 거래, 무엇이 궁금하세요?”를 참고

○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는 판매회사의 투자권유 없이 투자자 본인이 투자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라도 판매회사는 ‘투자자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투자자에게 적합한 펀드인지를 검토하여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의 판매절차에 대해서는 “제3장 파생상품 등의 거래는 신중하게”를 참고

● 판매회사는 투자자 정보확인서 등의 정보를 토대로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구분하고 투자자의 투자성향 등급에 적합한 펀드상품을 선정하여 권유합니다.

○ 현재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표준투자권유준칙은 투자성향을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등 5개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투자성향 등급(표준투자권유준칙 기준)

- ◆ 1등급(안정형) :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 ◆ 2등급(안정추구형) :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 ◆ 3등급(위험중립형) :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음
- ◆ 4등급(적극투자형) :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함. 투자자금의 상당 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 ◆ 5등급(공격투자형) :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투자상품별 투자위험 등급분류

구 분	초고위험 (Speculative Risk)	고위험 (High Risk)	중위험 (Middle Risk)	저위험 (Low Risk)	무위험 (Risk Free)
채 권	투기등급 포함(BB이하)		회사채 (BBB+~BBB-)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A-이상)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보증채
파생결합 증권	(ELS, DLS) ELW	원금비보장형 ELW	원금부분보장형	원금보장형	
주 식	신용거래,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주식		
집합투자증권	펀드투자 위험등급(1등급 ~ 5등급)에 따라 분류				
선물옵션	선물옵션				

* 펀드 성격과 구조 및 위험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자산운용사가 투자설명서 표지상단에 표시한 펀드 투자위험등급(1~5등급)에 따라 분류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분류기준

구 분	초고위험 (Speculative Risk)	고위험 (High Risk)	중위험 (Middle Risk)	저위험 (Low Risk)	무위험 (Risk Free)
안 정 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안정추구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위험중립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적극투자형	투자권유불가				
공격투자형					

-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특정 펀드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그 펀드의 투자 대상자산 등 운용전략, 원본손실위험 등 투자위험, 보수·수수료 및 펀드운용비용, 환매방법 등에 대해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 이 경우 판매회사는 투자설명서(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를 이용하여 펀드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합니다.
- 판매회사 직원으로부터 투자권유 펀드에 대한 설명을 듣고 펀드가입을 원할 경우 통장수령, 투자 설명서 수령(교부확인서 제출), 투자금 납부 등 펀드매수절차가 진행됩니다.
 - ☞ 최종적으로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음

3 펀드보유(환매)시 확인해야 할 정보 및 유의사항은?

- 펀드 가입 이후 자산운용사와 판매회사, 보관·관리회사는 투자자가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 현황, 투자규모 등을 유지·관리하며, 투자자에게 주기적으로 잔고를 통보하고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등 다음과 같은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 (수동적 서비스) 투자자 전화 문의 등에 대한 응대, 투자자 보고서 발송(자산운용보고서, 자산 보관·관리보고서) 등
 - (적극적 서비스) 펀드 잔고 통보, 자산관리 보고서 발송, 우수(인기)펀드 추천, 투자자 세미나 개최 등
- 자산운용사가 작성하여 판매회사가 송부하는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에는 운용성과 개요 및 운용 기간중 손익, 펀드자산내역,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 등의 중요한 투자정보가 담겨있으니 분기별로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별 수익률 정보 등 펀드잔고 확인은 펀드 가입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제공한 전자우편(E-mail) 등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펀드 가입시 판매회사가 제공하는 잔고통보 서비스를 이용을 신청(E-mail등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자산보관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신탁회사가 작성하여 판매회사가 보내주는 분기별 자산보관·관리 보고서는 펀드의 적정 운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자산보관·관리보고서는 펀드매니저 변동사항, 약관변경 사항, 수익자 총회 의결내용, 운용상 위반사항·시정사항 등 펀드의 적절한 운용여부를 분기별로 체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 펀드매니저 변경, 환매연기 등 중요사항은 수시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시공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http://dis.fundservice.net>) 사이트의 펀드 수시공시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운용사·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나 전자우편, 혹은 자산운용사·판매회사 본·지점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 본인이 가입한 펀드의 간편코드번호(5자리, 협회가 부여)를 알고 있으면 검색이 간편합니다.

● 이밖에 펀드의 환매정보, 즉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추이), 환매대금지급일, 환매수수료(환매 제한기간중 투자자부담)에 관한 정보는 투자설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 가입한 펀드의 운용실적, 기간 수익률, 실현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http://dis.fundservice.net>)사이트의 운용실적 비교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참고자료로 펀드평가회사가 제공하는 펀드평가, 펀드시황, 각종 펀드통계 자료 등 펀드 투자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제로인(<http://www.funddoctor.co.kr>)
- 모닝스타(<http://www.morningstar.co.kr>)
- 한국펀드평가(<http://www.fundzone.co.kr>)

4 펀드명칭 알기 쉽게 바뀝니다.

● 펀드 명칭은 투자자의 펀드 선택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동안 자산운용사가 펀드명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펀드 특성과는 상관없는 펀드 명칭이 많아 투자자가 펀드명칭만으로 그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의 종류가 변경되고, 펀드의 운용대상자산 및 운용 제한 등이 변경되는 것을 계기로 펀드명칭을 자본시장법 체계에 맞춰 재정비하는 한편, 자산 운용사별 펀드명칭 표기기준을 통일하여 펀드명칭에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가 표시될

수 있게 개선하였습니다.

☞ 종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은 펀드의 종류를 7개(증권펀드, 파생상품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실물 자산펀드, 재간접펀드, MMF)로 분류하였으나 자본시장법은 5개(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MMF, 혼합자산펀드)로 구분

●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출시되는 펀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펀드명칭이 부여됩니다.

- (자본시장법상 펀드 종류) 펀드명칭에 자본시장법상 5개 펀드의 종류인 「증권, 부동산, 특별 자산, 혼합자산 및 단기금융」이란 문자중 어느 하나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 (주된 투자대상 자산) 펀드의 주된 투자대상자산은 자산운용사가 펀드재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 투자자가 펀드특성 및 위험등급을 구분하는 중요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채권, 주식, ELS 등 펀드의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펀드명칭에 표기하도록 하여 투자자가 펀드의 주된 투자 대상자산이 무엇인지 명칭에서부터 인식하여 펀드 운용전략의 기본요소를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펀드 구조 및 특성)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모집방법, 펀드구조 등에 따라 환매금지형, 종류형, 전환형, 모자형, 상장지수형 등 특수형태 펀드를 별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본시장법에서 분류한 펀드 구조 및 특성을 펀드명칭에 표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 재간접형(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펀드), 파생형(위험회피 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 10% 이상 투자하는 펀드)을 펀드 명칭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특수형태 펀드 종류

종 류	분류 기준	근거
종류형	판매수수료, 보수 등이 다른 펀드. 주로, 멀티클래스(multi-class) 펀드라고 함	법§231
전환형	다른 펀드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펀드. 주로 엄브렐라(umbrella) 펀드라고 함	법§232
모자형	자펀드가 모펀드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구조	법§233
상장 지수형	상장지수를 추적하도록 설정된 개방형 인덱스펀드. 주로 ETF(Exchange Trade Fund)라고 함	법§234
재간접형	펀드 자산 총액의 40%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펀드	법§81
파생형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펀드, 또는 파생 결합증권(ELS)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펀드	법§93

* 증권펀드의 경우 대부분 종류형으로 설정되고 있고, 펀드신고서에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펀드명칭 간소화를 위해 “종류형”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음

펀드명칭 적용사례

(예시 1)

삼성투자신탁운용(주)에서 주식에 주로 투자하고 파생상품을 10% 초과하여 운용하는 종류형 자투자신탁의 경우

➔ 삼성 △△△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내용	삼성	증권	자펀드	투자신탁	(주식)	(파생형)
기준	자산운용회사	법정분류	특수형태	투자기구	주된투자대상자산	운용규제

(예시 2)

하이자산운용(주)에서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 하이 △△△ 증권 투자신탁(ELS-파생형)

내용	하이	증권	n/a	투자신탁	(ELS)	(파생형)
기준	자산운용회사	법정분류	특수형태	투자기구	주된투자대상자산	운용규제

- 한편,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에 판매된 펀드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판매회사가 별도로 통지하게 되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의 펀드공시, 금융투자협회 (<http://www.kofia.or.kr>), 해당 펀드의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